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의 유산법¹⁾

강은희*

들어가는 말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을 도와주라는 규정은 신명기에서 여러 번 나온다.²⁾ 이들 규정은 약자들을 도와주라는, 지극히 당연한 인본주의적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대를 불문하고 다수의 학자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에 관한 규정들을 수준높은

*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구약학

- 1) 본고는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 3장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해당 장은,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에 초점을 두고서, 한편으로는 이들과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다른 가난한 이들을 비교 구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레위인들 과도 구별하여 고찰하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제한된 지면 안에 모든 내용을 충분히 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을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으로 한정한다. 전체 내용은 필자의 논문을 보라. EunHee Kang, "The Dialogic Significance of the Sojourner,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in Deuteronomy: Through an Analysis of Chronotopes using Bakhtin's Reading Strategy," Ph.D. Dissertation (Graduate Theological Union, 2010).
- 2) 신명기 10:18; 14:29; 16:11,14; 24:17,19,20,21; 26:12,13; 27:19. 신명기에서 언급되는 순서는 거류인,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이다. 그러나 이들 세 그룹이 한데 엮여지게 된 것은 신명기의 특수한 현상으로,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보호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던 대상인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에다 '거류인'이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존중하여,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의 순서로 고찰해 나갈 것이다.

휴머니즘의 발로로 해석하고 있다.³⁾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여러 부류의 약자들이 언급된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⁴⁾ 이들 중에서도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은 특별히 보인다. 약자들을 위한 신명기의 여러 규정들 중,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데다, 신명기에서 이들 세 그룹은 마치 단일 실체인양 항상 함께 언급되며 이들을 위한 구제책도 동일하다.

본고는 이들 세 그룹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어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명기에서 구제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여타의 취약 계층과는 구별되는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이 하나의 조합을 이루기 전 개별 그룹으로서의 특성을 살핀 후, 이들이 한데 엮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이 받게 되는 혜택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신명기에서 이들에게 보여주는 관심의 본질은 휴머니즘을 넘어 모세오경 내러티브의 종착점인 약속의 땅 상속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 고자 한다.

2. 신명기의 세 그룹: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

2.1. 아버지 없는 아이(아툼, יָתוּם)

대다수의 번역본에서 히브리어 야툼은 “고아”라고 번역된다. 고아

3) Samuel Rolles Driver,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02), xxiv; Moshe Weinfeld, "The Origin of the Humanism in Deuteronomy," *JBL* 80 (1961), 242; ide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2), 282-297; A. K. H. Mayes, *Deuteronomy* (London: Oliphants, 1979), 246.

4) 가난한 이들(신명기 15:1-11), 노예들(15:12-18), 일용 노동자들(24:14-15) 등.

의 정의는 부모를 잃은 미성년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야툼은 학자들 간에 정의가 다르다. 헬머 링그렌(Helmer Ringgren)과 해럴드 베네트(Harold Bennet)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히브리어 야툼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보는 반면, 요한 렌케마(Johan Renkema)는 양친부모 둘 다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⁵⁾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는 양측 학자들 모두 자신들의 논거로 애가 5:3을 제시한다.⁶⁾

아버지 없이 우리는 “야툼”이 되었고,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처럼 되었나이다⁷⁾.

렌케마는 여기서 “우리”로 지칭되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잃은 고아로 본다. 그들의 어머니인 예루살렘(히브리어에서 문법적으로 도시는 여성이며, 렌케마는 예루살렘을 그 주민들의 어머니로 간주한다)이 함락된 데다, 그들의 “아버지(하느님)”로부터는 버림받았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렌케마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해당 구절은 아버지의 부재는 명시하고 있으나 어머니의 부재는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들을 “과부들”이라 부르고 있다. 과부가 된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단지 은유적으로 도시라는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만으로 야툼을 양친부모 모두 잃은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반하여 링그렌을 비롯, 다수의 학자들은 “엔 압”과 “야툼”을 동격으로 간주하여, 아버지가 없는 경우를 야툼이라고 본다⁹⁾. 특히 해

5) Johan Renkema, “Does Hebrew YTW M Really Mean Fatherless?” *VT* 45 (1995), 119-122.

6) 성경 책명은 한글 번역본마다 차이가 있다. 필자는 성경 번역을 위하여 뜻을 모았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노력이 두고두고 결실을 맺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번역의 성경 책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7)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본고의 히브리 성경 번역은 필자의 직역이다.

8) J. Renkema, “Does Hebrew YTW M Really Mean Fatherless?” 120.

9) Helmer Ringgren, “אָטום”, *TDOT*,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럴드 베네트는 성경 외적, 내적 증거들을 동원하여 보다 자세한 논증을 전개한다. 그는 페니키아 문서에서 *ytm* (히브리어 야툼에 해당되는 페니키아 어근이 명백히 “과부의 아들”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시한다. “고아 (*ytm*), 곧 과부의 아들.”¹⁰) 물론, 이들 언어들인 같은 어족에 속하고 동일한 어근을 공유하더라도, 말이란 것은 저마다의 어근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따라서 페니키아의 용어 사용이 히브리어 용어 사용에 관한 결정적 증거로 제시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예는 야툼이라는 어근이 공유되는 문화권에서 사용되어 지던 의미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성서에서의 증거로는 베네트 역시 애가 5:3과 욥기 24:9를 예로 들고 있다.¹¹ 욥 24:9는 야툼을 누군가의 품속에서 빼앗아가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야툼”을 품속에서 빼앗아가고
 그들은 담보물을 가난한 자로부터 요구하네.

이 구절 자체만으로는 야툼이 확실히 친모의 품에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베네트의 견해로는 누구의 품인지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¹² 욥기 24:9는 무력한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 수탈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가 가난한 이로부터 담보를 요구하는 장면이다. 만일 양친 모두 없는 상태가 야툼라면, 그 아이는 지금 이미 타인의 품속에 있다는 것이며, 이런 상태의 아이를 담보물로 취하여 간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성립되지

Ringgren, vol. 6 (Grand Rapids: Eerdmans, 1977), 479.

10) Harold V. Bennett, *Injustice Made Legal: Deuteronomic Law and the Plight of Widows, Strangers, and Orphan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52.

11) *Ibid.*, 53.

12) *Ibid.*, 54.

않는다. 욥기 24:9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이제는 과부가 된 자신의 생모의 품속으로부터 낚아채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을 잃고 몰락해 가는 무력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성을 묘사한 구절로서의 의미가 살아난다. 따라서 욥기 24:9는 아버지를 잃은 상태가 야툼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유효적절하다고 본다.

필자는 링그렌과 베네트의 견해에 공감하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두 개의 본문을 더 제시하고자 한다.

출애굽기 22:23

그리고 나의 분노가 불타올라 나는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며
 너희의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야툼”이 되리라.

시편 109:9

그의 자녀들은 “야툼”이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여윈 경우가 야툼이라면 출애굽기 22:23는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되고”라는 표현 대신 “너희 아내들도 죽일 것이며”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여기서 죽는 이는 아내가 아닌 청자들이며, 청자의 죽음과 더불어 과부와 “야툼”이 형성된다. 물론 “너희,” “아내들,” “자녀들” 모두 복수형으로 등장하며, 남성 복수형 속에는 개별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¹³⁾ 이미 아내와는 사별한 채

13) 비록 구약성서 그 어디에도 여성들을 독자로부터 제외시키는 규정은 없으나, 대개의 경우 구약 성서는 남성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전제하고 있다. 특히 신명기에서 청자는 단수이든 복수이든 문법적으로 남성인 “너희”이다. 남성과 여성들이 섞여 있는 청중에 대해서는 남성 복수 대명사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여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옳으나 고대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사회문화를 고려할 때, 여기서 의도하는 바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자주 등장하는 구절인 “너희 아내들과 너희 자녀들”은 이들이 주된 청자인 성인 남성에게 딸려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 어디에도 여성들을 주된 청층으로 전제하여 “네 남편은 죽고 네 자녀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될 것이며, 너는 과부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관해 필리스 버드(Phyllis

자녀만 있는 남성이 죽은 후 그의 남은 자녀들도 야토밈이므로, 이는 비록 부분적이긴 하나, 부모를 모두 잃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시편 109:9는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준다. 이 구절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단수), 그리고 그의 자녀들(복수)에 관한 것이다. 복수형에서 기인하는 그 어떤 모호함도 없이, 여기서는 한 남자가 죽으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야토밈이 된다. 또한 여기서의 야툼은 독립적 개인의 차원이 아닌 가족 관계에 의거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령 문제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다. 구약성서는 야툼의 나이제한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야툼이 자주 과부와 함께 거론될 뿐만 아니라 이들 두 그룹이 언급되는 상황은 가장을 잃음으로써 곤경에 처한 상태임을 미루어 짐작할 때, 야툼은 장성하여 과부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라, 여전히 어머니에 의존해야 하는 연령대임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야툼의 기본적 정의는 ‘아버지를 잃은 미성년자라 결론지을 수 있다.

2.2. 과부(알마나, אִלְמָנָה)

야툼의 경우는 동일한 단어를 두고서 아버지 없음이나 양친 모두 없음이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반해,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는 알마나(אִלְמָנָה), 이사야 알마나(אִשָּׁה אִלְמָנָה), 그리고 에셋 하멜(אִשָּׁתְּ הַחַמֵּץ) 세 가지나 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세 용어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으며 알마나라는 단어는 혼인 상태에 관한 중립적 서술이 아니라 남성 배우자의 상실에 따른 삶의 고난도 함께 내포된

Bird)는 신명기의 실질적인 청자는 남녀 포함한 “너희”라기 보다는 성인 남성, 특히 가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hyllis A. Bird,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21-23.

말로써 이해하고 있다.¹⁴⁾ 나오미 슈타인버그(Naomi Steinberg)는 이러한 용어의 구분에 관하여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제공한다.¹⁵⁾

구약 성서속의 과부들이 일괄적으로 알마나로 지칭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추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슈타인버그는 남편을 여윈 여성들이 알마나대신 이샤 알마나(2사무 14:5; 1열왕 11:26; 1열왕 17:8-24) 또는 에셋 하멨(룻 4:5; 신명 25:5-10)으로만 지칭되는 몇 가지 경우를 발견하고, 이 세 용어들을 구별하여 특히 알마나가 처한 가혹한 삶의 현실을 부각시킨다.

구약성서에서 이샤 알마나는 다섯 번 등장한다. 사무엘하 14:5(트코아의 여인), 열왕기상 7:14(히람의 어머니), 열왕기상 11:26(예로보암의 어머니), 그리고 열왕기상 17:9-10(사렙타의 과부). 여기서 이샤 알마나로 불리는 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도 있고 적어도 아들 하나는 있는 과부로 등장한다. 슈타인버그는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렙타 과부의 이야기를 가장 뚜렷한 증거로 제시한다. 이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는 ‘이샤 알마나라고 불렸다(1열왕 17:9,10).¹⁶⁾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그 여인을 이샤 알마나라 부르지 않고 ‘알마나라 칭한다(1열왕 17:20). 이처럼 동일한 여인에 대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기점으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슈타인버그는 이샤 알마나란 아들이 있는 과부를 지칭하는 용어라 확신한다. 아들의 존재와 더불어 이샤 알마나에 관하여 슈타인버그가 발견한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이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코아

14) Harry Hoffner, “אִשָּׁת אַלְמָנָה,” TDOT vol. 1, 288-289; Johannes Kühlewein, “אִשָּׁת אַלְמָנָה,”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1, 128.

15) Naomi Steinberg, “Romancing the Widow: The Economic Distinctions Between the ‘ALMANA, the ‘ISSA-’ALMANA and the ‘ESST-HAMMET,” in Simon John De Vries et al., eds., *God’s Word for Our World*, JSOTS, vol. 388(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327-346.

16) 이 점에 관하여 주요 영역본들 (RSV, NRSV, REB, NAB, NJB) 과 『공동번역』 및 가톨릭 『새번역』 등도 히브리어 원문의 이샤 알마나와의 구별 없이 모두 “과부”로 번역해 놓고 있다.

의 여인은 상속자인 그녀의 아들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 재산이 있음을 의미한다(2사무 14:7). 다른 두 명의 이샤 알마나는 유명한 지도자나 왕의 어머니이다(1열왕7:14; 11:26). 사렙타의 과부는 “집안” 또는 “식솔들” 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집안의 “마님,” 또는 “집주인” 으로 불리기도 한다(1열왕 17:15,17).¹⁷⁾ 따라서 1열왕기 17장의 경우만을 놓고 볼 때, 이샤 알마나는 상속재산과 최소한 한명의 아들이 있는 과부라는 슈타인버그의 정의는 설득력이 있다.¹⁸⁾

슈타인버그가 정립해 놓은 분류에 따르자면 과부이고 상속 가능한 재산이 있되 아들이 없는 경우는 과부라 하지 않고, “죽은 이의 아내”라 칭한다. 루은 남편과 사별했음에도, 단 한 번도 알마나라 지칭되지 않으며, 죽은 남편 일가 중 한 사람과의 재혼 과정에서 에셋 하멨이라 불린다. 여기서 슈타인버그는 에셋 하멨이란 자식 없이 남편과 사별했지만, 남편 일가 안에서의 재혼을 통하여 아들을 얻음으로써 죽은 남편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경우의 여인을 칭한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타마르와 유다의 이야기(창세 38)를 들어 논증을 이어간다.

계속되는 아들의 죽음으로 단 한명의 아들만이 남게 되자 유다는 타마르에게 그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알마나로서 지내면서, 마지막 남은 유다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창세 38:11). 슈타인버그는 유다가 이러한 제안을 함으로써 타마르의 수속혼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사용된 용어는 에셋 하멨이 아니라 알마나인데, 타마르를 죽은 이의 아내가 아닌 과부라고 칭하고 있는 유다의 단어 선택 자체가 타마르의 수속혼을 허용 않으려는 유다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죽은 남편의 상속자를

17) 17 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글자 그대로 옮기자면, “그 집주인인 여인” 이다. 『공동번역』은 15절과 17절 모두 과부로 옮겨놓은 반면, 가톨릭 『새번역』에서는 15절에서 “그 여자의 집안,” 17절에서 “집주인 여자” 로 옮겨 히브리어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18) 또한 『칠십인역』에서도 알마나, 이샤 알마나, 에셋 하멨 간의 구별이 그대로 반영되어, 알마나는 *χήρα*, 이샤 알마나는 *γυνή χήρα*로 번역되어 있다.

얻기 위한 혼인과 관련된 여인에 관한 호칭은 관련 규정을 기술한 신명기 25:5-10에서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도 해당 여인은 단 한 번도 알마나라 불리지 않으며 항상 에셋 하멨이라 지칭된다.²⁰⁾

따라서 슈타인버그는 소거의 법칙에 의해, 알마나에 관하여 보다 좁은 정의를 내린다. 알마나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죽은 남편의 상속과는 별개로 과부 자신이 결혼때 지참금으로 가져와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과부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품목들)과 “부양의무를 진 남성”(아들 또는 친족)의 역할수행 불가로 인하여 경제적 수단이 미미한 과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²¹⁾ 슈타인버그의 견해로는 알마나와 관련된 신명기의 구절들(삼년마다의 십일조 규정 14:28-29; 26:12-13; 추수밭에서의 이삭줍기 24:19-21) 역시, 알마나를 “일반적 과부의 범주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계층에 속하는 이들”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²²⁾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알마나에 대한 슈타인버그의 정의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소거의 법칙으로 도출된 결론은 문제가 있다.

슈타인버그의 연구는 구약성서 속 과부들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 알마나의 의미를 정의한다고 볼 때, 세 가지 유형의 과부들에 관한 그녀의 구별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 알마나의 상황이 부양 의무를 진 남성의 부재가 아니라 역할 수행의 불가라 한다면 남편을 잃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린 아들을 가진 여인은 알마나일까 이샤 알마나일까? 또한 이샤 알마나를 아들과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로 정의할 경우, 상속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샤 알마나가 빈곤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이샤 알마나와 그 아들에게 남겨진 재산이 너무나

19) N. Steinberg, “Romancing the Widow: The Economic Distinctions Between the ‘ALMANA, the ‘ISSA-’ALMANA and the ‘ESST-HAMMET,’” 332-333.

20) Ibid., 338-340.

21) Ibid., 332.

22) Ibid., 340.

부실하여 명목상의 상속에 지나지 않아 그들이 궁핍을 겪게 된다면 빈곤에 관한 한 알마나와 이샤 알마나 간의 실질적 차이란 무엇인가?²³⁾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이샤 알마나는 그냥 알마나가 아니고 이샤 알마나이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제시하는 알마나를 위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에셋 하렘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성서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보면 수숙혼의 과정에 있는 여인들은 명백히 이 용어로 지칭되지만, 해당 여인이 남편의 형제와의 결합이 성사 되거나 혹은 거절된 이후에도 여전히 에셋 하렘으로 지칭되는지에 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셋 하렘이란 영구적 명칭이라기보다는, 남편을 여윈 후 수숙혼의 가능성이 있는 여인에 대한 임시적 호칭인 듯도 하다.

이러한 모호성을 보면서, 필자는 알마나와 이샤 알마나가 근본적으로 상호 배타적 용어인지 묻고싶다. 슈타인버그의 고찰은 그녀가 제시한 예문들 속에서는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지만, 그 모든 예문들은 구약 성서 전체에서 남편을 여윈 여인들을 이러한 특별한 용어로 지칭하는 유일한 경우들이다. 특히 사렘타의 과부 여인의 경우는 구약 성서 전체에서 알마나와 이샤 알마나가 동시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이다. 그 예문에서 처음에는 이샤 알마나라 불리우던 여인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알마나라고 호칭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지칭의 변화가 얼마나 일관성있는 용법인지를 단 한번의 예로써 가늠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예문에서 그 여인은 “집안의 마님” 으로서도 지칭됨으로써 알마나와 이샤 알마나 역시 엄밀한 의미의 구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여인을 표현상 반복을 피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칭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도 제기할 수 있다. 슈타인버그가 제시한 상기의 예문을 제외

23) 2열왕기 4:1-7에 등장하는 과부의 경우, 이 여인은 아들이 있었고 극심한 부채로 그녀의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마나도 이샤 알마나도 아닌 “예언자의 아내”로 호칭된다. 이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슈타인버그가 제시한 호칭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불릴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고는 구약성서에서 알마나는 해당 여인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또한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을 통칭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된 타마르의 경우(창세 38)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슈타인버그는 막내 아들을 타마르에게 주지 않으려는 유다의 의도가 알마나라 단어의 선택 속에 이미 드러나 버렸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필자는 유다의 단어 선택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만일 유다가 에셋 하벤 대신 알마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 버렸다고 한다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 싫어 계책을 꾸미려는 유다가 그토록 쉽사리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릴 만큼 단순하고 어리석은 인물이 되며, 또한 알마나라는 호칭으로 인해 명백히 드러나는 시아버지의 속내 앞에서도 타마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유다가 타마르에게 알마나로 머물러 있으라고 명한 것은 남편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재혼하지 말고 기다려 보라는 뜻 그대로일 뿐이다.

여기까지의 고찰로 보아 알마나는 남편을 잃은 여인이라는 기본 의미만을 제공할 뿐, 그 단어 자체가 해당 여인의 경제적 상태나 자녀의 유무를 바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알마나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과부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근본개념은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남아있는 여성이다.

알마나가 포괄적 의미로서의 과부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은 잠언 15:25와 욥기 24:3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잠언 15:25에서의 알마나는 “경계”를 소유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거만한 자의 집은 짓부수시나 과부의 경계는 지켜준다.”

여기서 ‘거만한 자의 집’과 ‘과부의 경계’는 대구이며, 이 과부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이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인지 본시부터 그녀의 소유였던 지참금으로서의 토지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느님께서 과부를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과부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은 과부의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과부의 연약함(곧 부당함에 대항하기 어렵고, 피해 입기 쉬운 상태)에 있다. 그 때문에 하느님이 직접 과부의 보호자로서 나서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알마나라는 호칭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반드시 남편을 잃은 극빈한 여인에 게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욥기 24:3는 가장을 잃은 가족이 그들의 가족을 빼앗기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들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가져가네.”

여기서도 단수로서의 과부와 복수로서의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한 여인이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기서 그 가족들은 과부와 그에 딸린 아이들의 재산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경제적 상황 자체보다는 가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남은 가족들의 무력함과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취약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예들로 보아 알마나는 남편이라는 보호막이 없는 여인을 의미하며, 알마나라는 단어 자체가 경제력이 나 자녀의 유무까지 함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2.3. 거류민(게르, 37)

히브리어 게르는 정의와 번역상의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안고 있다. 이 단어를 제대로 번역하기 위해서라도 그 정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게르 용어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는 디터 켈러만(Diether Kellermann)은 게르를 “자신의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혈족관계와 출생지로부터 떨어져 오는 보호막과 특권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한다.²⁴⁾ 따라서 게르의 본질적 특성은 ‘자신의 땅을 떠나 있음’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민족적 정체성, 공동체 내 편입가능성의 정도, 그리고 경제적 지위 등이다.

게르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한 한, 이 게르가 반드시 비 이스라엘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자신의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는 땅, 또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자신의 조국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슈니야 벤도르(Shunya Bendor)는 태생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집”(본가; **בֵּית אָבִי**)을 떠나는 순간부터 얼마든지 게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²⁵⁾ 왕대일, 마리안 베르트랑(Marianne Bertrand), 하경택 등, 다수의 학자들이 게르의 보호에 관한 신명기의 관심을 북 이스라엘 멸망 후 발생한 북쪽 난민들의 유다 유입과 연결시키고 있다.²⁶⁾ 이는 신명기의 게르가 반드시 비 이스라엘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준다. 따라서 게르란 단어는 민족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정의할 수

24) Diether Kellermann, “גֵּר,” TDOT,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vol. 2 (Grand Rapids: Eerdmans, 1977), 443.

25) Shunya Bendor, *The Social Structure of Ancient Israel: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Beit 'Ab) from the Settlement to the End of the Monarchy* (Jerusalem: Simor, Limited, 1996), 241, n. 94.

26) 왕대일, “나그네(게르, גֵּר)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102, 108; Marianne Bertrand, “L'étranger dans les lois bibliques,” in *L'étranger dans la bible et ses lectures*, ed. Jean Riud (Paris: Cerf, 2007), 79-80;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 (2010), 70-71; José E. Ramírez Kidd, *Alterity and Identity in Israel: The גֵּר in the Old Testament*, BZAW, no. 283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45, 115.; Kellermann, 445도 참조하라.

있는 용어가 아니다.

또한 게르는 타지에서 게토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개인 또는 집단에 관한 용어가 아니다. 게르는 일정 경계를 지닌 공동체의 영역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자로서, 완벽한 외부인으로 간주되는 노크리(외국인, נֹכְרִי)와는 다르다.²⁷⁾ 신명기에서 노크리가 보호나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법이 없으며 이는 게르에 대한 신명기의 관심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하느님과 이스라엘간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를 가능케 하는 편입에 관하여 신명기에서는 회중이 그 외적 척도의 역할을 한다. 게르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들이 있다.

크리스티아나 후텐(Christiana Houten)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게르는 결코 회중 속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본다.²⁸⁾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프리 티게이(Jeffrey Tigay)는 비 이스라엘인을 회중으로부터 무조건 제외시키는 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회중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신명기 23:4-5에서 특별히 거론된 모압과 암몬에 한한 것임을 상기시킨다.²⁹⁾ 그 외의 민족들은 설령 이집트인들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동화기간이

27) Bernhard Lang, “נֹכְרִי,” TDOT, ed.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vol. 9, (Grand Rapids: Eerdmans, 1977), 425-6;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73. ‘노크리’는 해당 지역의 사람들과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로서, 민족적, 종교적으로는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고, 정치적으로는 적대시되기도 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동료 이스라엘 인들과 노크리 간에 이중적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채권자는 동료 이스라엘 인을 채권해서는 안되지만, 노크리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신명 15:3); 노크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신명 23:21); 또한 노크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자격도 없다(신명 17:15); 뿐만 아니라 죽은 짐승이 있을 경우, 노크리에게는 그것을 팔수 있지만 게르에게는 거저 주도록 명하고 있다(신명 14:21).

28) Christiana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Sheffield: JSOT Press, 1991), 99-101, 108.

29) Jeffrey Tigay, *Deuteronomy*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211.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중 속으로 편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태생 이스라엘인으로서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서 다른 지파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회중으로의 편입을 두고 민족적 정체성 자체가 거론될 필요조차 없다. 이스라엘의 축제들(신명 16)이나 계약 체결(신명 29:10), 그리고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는 행사 등, 신명기에서 게르를 이스라엘 백성의 축제와 종교행사에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려해 볼 때 게르는 종교적인 영역으로까지도 상당 부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명기 23:2-9는 게르가 회중으로 편입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르의 경제적 지위에 관해서는 성서에서 언급되는 게르의 직업군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은 일용 노동자(신명 24:14)나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긷는 사람들(신명 29:10), 또는 석수나 짐꾼들(1역대 22:2; 2역대 2:16)로 언급된다. 이를 통해 게르는 그 사회의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게르의 근본적 특징은 ‘자신의 연고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게르 자체가 빈곤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³⁰⁾ 게르가 겪는 취약성의 뿌리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땅에서 산다는 것의 문제이지 재산 유무의 문제가 아니다.³¹⁾ 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적 희생양이 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문제의 핵심은 게르의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을 야기시키는 것은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땅에서 사는’ 상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게르에 관한 이러한 정의에 맞는 번역은 무엇일까? 신명기의 세

30) 창세기 아브라함은 가나안인들 사이에서 게르로 살았지만, 부유했으며, 그들로부터 땅을 구매하였다.

31) 이와 유사한 논증으로 다음 학자들의 논지를 보라. J. Kidd, *Alterity and Identity in Israel: The אֲרָם in the Old Testament*, 47; Léon Epszstein,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1986) 116. 무엇보다도 이들 게르의 취약성의 핵심은 비록 게르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땅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떠나줄 것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떠나야만 한다는데 있다 (창세 26:16-17).

그룹 중 게르가 성서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논고에서도 가장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한글 번역으로는 『공동번역』의 “떠돌이,” 『개역개정』의 “객,” 가톨릭 『새번역』의 “이방인” 등 여러 가지이며 영어권 번역은 더욱 다양하여 “외국인”(foreigner: NJB), “이방인”(alien: REB, NAB), “낯선 이”(stranger: 티케이, 베네트), “이민자”(immigrant: 고웬, 스피나), 그리고 “체류자/거류인”(sojourner: RSV)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번역 중 “외국인”의 경우는 노크리로서의 외국인과 혼동을 일으키며, 특히 신명기 14장의 경우처럼 게르와 노크리가 동시에 등장할 경우 구별이 되지 않는다.³²⁾ 또한 “외국인,” “객,” “이방인,” “낯선 이” 등은 게르가 본토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며, ‘거류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구르(גָּר)와 연관된, 게르의 특징적 거주방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는 바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

스피나와 고웬은 거주지를 옮기는 행위는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것이니 만큼, “이민자”가 효과적인 현대적 번역이라 주장한다.³³⁾ 그러나, “이민자”는 현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민자의 법적 지위, 이민법, 이민과정 등을 강하게 연상시키는 용어이며,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의 게르가 현대의 “이민”이라는 제도와 맞먹는 과정을 거치는 신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명기를 포함한 구약 성서는 게르를 민족적 정체성이나 국적과 관련하여 명기하지 않는다. 또한 게르를 정식 시민권자로 이행하는 전 단계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는 게르가 예외없이 비 이스라엘이어야 함을 전제하는데,

32) 이러한 문제는 특히 NJB에서 드러나는데 신명 14:21의 경우 NJB 번역은 게르와 노크리를 각각 “resident foreigner”(거주 외국인)와 “foreigner”(외국인)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게르만 단독으로 있을 시는 그냥 “외국인”(신명 14:29)으로 번역하여 신명 14:21의 게르와 노크리간의 구별을 흐려놓고 있다

33) Donal E. Gowan, "Wealth and Poverty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the Widow, the Orphan, and the Sojourner," *Interpretation* 41 (1987), 343; Frank Anthony Spina, "Israel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ed.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323-26.

이점은 명백하지 않다. 이미 언급하였듯, 켈러만 같은 학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의 망명자도 게르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조상으로부터의 상속지가 없는 레위인들까지도 일종의 게르로 간주하고 있다.³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신명기가 규정하는 도피성읍들이다(신명 4:41-43; 19:1-13). 도망자의 신분이 된 이스라엘인이 조상의 상속지를 떠나야 하더라도 이 성읍들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게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게르의 바람직한 번역으로서 비록 현대적 표현이 아닐지라도, “거류인”을 제안하고 싶다. 히브리어 게르 자체가 “거류하다, 남의 땅에서 지내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구르”와 관련되어 있다.³⁵⁾ 따라서 동사 구르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이방인이나 여타의 어떤 단어보다도 동사 ‘거류하다’의 주체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류인이 가장 적합하다. 이로써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다른 이들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기본적 의미를 살리는 동시에 정치적, 민족 정체성적, 그리고 종교적 소속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보유함으로써 게르가 이스라엘인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단절시키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지닌 야툼, 알마나, 게르, 이들 세 그룹이 한데 엮이게 될 때, 어떤 새로운 의미가 형성될까?

3. 총체로서의 신명기의 세 그룹

신명기는 지금까지 논의된 세 그룹 외에도 채무자, 일용노동자, 노

34) 본고 각주 24, 26을 참조하라.

35) ‘구르’는 ‘체류하다’ 또는 ‘거류하다’로 번역되고, 이들 둘 사이에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겠지만, 게르와 발음까지 비슷한 ‘거류’가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본다.

예 등, 다양한 부류의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빛의 탕감이나 품삯의 보장,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 등, 저마다에 맞는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민은 마치 이들이 하나의 실체인양 묶어서 동일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명기에서 어떤 종류의 관심사가 이들 세 그룹을 하나로 엮어주고 있는 것일까? 다수의 학자들이 이들 세 그룹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를 연역해 보려 시도해 왔다. 레슬리 호프(Leslie Hoppe)는 땅이 없다는 경제적 이유를 드는가 하면, 데이빗 잉글하드(David Englehard)나 고완 등은 사회적 시각에서 보호막이 되어줄 존재 또는 직계가족 관계의 부재와 신명기의 세 그룹의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에 주목한다.³⁶⁾ 펜샴을 위시한 또 다른 학자들은 신명기의 세 그룹의 법적 지위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이들은 신명기의 세 그룹의 경제적 어려움은 법정에서 여타의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과 대등하게 자기 스스로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차적 문제로 본다.³⁷⁾

상기 세 가지 문제들 중, 신명기의 세 그룹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로서 단 한 가지만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이들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은 신명기의 세 그룹 개별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생역정을 통하여 어느 시점에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며, 단지 어떠한 유형의 어려움을 먼저 겪느냐의 문제일 뿐으로 일단 한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그 이외의 어려움들도 결국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그룹역시 한가지의 범주에 배타적으로 속할 것이라

36) Leslie Hoppe, *Being Poor: A Biblical Study*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7), 23; David H. Englehard, "The Lord's Motivated Concern for the Underprivileged," *CTJ* 15 (1980), 5; D. Gowan, "Wealth and Poverty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the Widow, the Orphan, and the Sojourner," 347.

37) Frank Charles Fensham,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36.

는 속단도 경계해야 한다. 거류인 가족의 경우, 가장이 죽는 순간 남은 가족들은 거류인인 동시에,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가장을 잃고 나면 이들이 거류인으로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벤도르는 지적한 바 있다.³⁸⁾ 경제적 빈곤, 법적 약자, 그리고 친족으로부터의 보호막의 부재는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측면만을 신명기의 세 그룹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이들을 한 데 묶어 다루는 이유는 이들이 처한 개별적 어려움으로부터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들을 위해 베풀고 있는 내용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신명기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규정은 축제(16장) 및 추수(14장, 24장)와 관련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주요 축제를 소개한다: 곧, 과월절(16:1-8), 추수절(16:9-12), 그리고 초막절(16:13-17)이다. 이들 세 축제들 중, 추수절과 초막절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을 초대한다. 과월절이 제외된 것에 관하여 혹자는 이를 의도되지 않은 생략으로 간주하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그들이 과월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과월절은 추수절이나 초막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³⁹⁾

과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간의 계약과 구원에 관한 것이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의 문제가 새삼스레 거론될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이에 반하여 주간절과 초막절은 명시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포함

38) S. Bendor, *The Social Structure of Ancient Israel: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Beit 'Ab) from the Settlement to the End of the Monarchy* 241. 벤도르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아버지 없는 아이 및 과부와 거류인의 연관성은 상황의 진행을 드러내어 보여 준다. 오늘의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는 내일의 거류인이 되기 쉽다.” 프니나 갈파즈-펠러역시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Pnina Galpaz-Feller, “The Widow in the Bible and in Ancient Egypt,” *ZAW* 120 (2008), 234.

39) 이 차이점은 이미 학자들 간에도 다양하게 인지되어 왔다. Georg Braulik, “The Political Impact of the Festival,” *SK* 20 (1999), 326-339.

될 수 없었기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 주간절과 초막절은 추수에 근거한 축제이며, 따라서 추수할 땅이 없다면 이 축제의 의미를 즐길 수 없다. 이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을 위한 여타의 다른 규정들, 곧 추수밭에서의 규정들을 고려해 볼 때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신명기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을 위해 추수절과 초막절의 축제에 초대하고(16:11,14), 추수밭에 곡식을 남겨두며(24:19,20,21), 삼 년마다 한 번씩 십일조를 나누어줄 것(14:29; 26:12)을 명하고 있다.⁴⁰⁾ 그런데, 추수와 축제와 십일조는 세 가지 독립적 활동이라기보다는, 땅을 삶의 근간으로 하여 살아가는, 하나로 길게 이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⁴¹⁾ 따라서 신명기의 세 그룹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관심들 중 어떠한 측면에서 출발하였건 간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그들이 땅의 소유권에 기반한 농경활동을 통하여 누릴 수 없는 품목들이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을 위한 규정은 ‘상속지의 부계 계승 구조인 공동체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은 땅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염두에 두고서, 신명기의 세 그룹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켜주는 도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거저 주어지는 농작물과 잔치음식일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땅의 상속자들이 일차적으

40) 이 중, 추수(24장)를 제외한 축제와 삼년마다의 십일조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과 더불어 레위인들도 공동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레위인도 신명기의 세 그룹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축제와 삼년마다의 십일조를 제외하고는 신명기의 세 그룹과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르고 그에 따른 함의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필자는 양자를 동일한 범주로 보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41) 신명기의 세 그룹에게 삼년마다 분배되는 십일조 역시 추수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십일조는 매해 추수 끝에 징수되기 때문이다.

로 갖는 의무와 권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축제와 곡식의 분배를 통하여 신명기의 세 그룹도 이스라엘에게 땅을 상속시켜주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 감사드리며, 그 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가는 말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만 바라본다면, 이들은 가난한 이들로 일반화되어버린다. 또한 이들에 관한 규정이 가장 많다는 것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되면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향한 신명기의 배려와 관심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휴머니즘의 발로 이상의 의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가 약속의 땅 상속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상속을 받은 이들로써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임을 염두에 두고서 이 규정들을 읽는다면,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의 관심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들의 구제, 또는 빈곤 문제의 해결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의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 이외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빛의 탕감이나 품삯의 보장, 또는 담보물의 제한 등의 도움이 주어지는 대신,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에게는 땅의 소출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에 대한 신명기의 특별한 관심은 하느님께서 정착지로 주신 땅에서 살면서도 땅의 상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땅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와 거류인, 이들은 물론 가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신명기의 규정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상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땅의 소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약속의 땅 상속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요어>

신명기법, 고아, 과부, 거류인, 땅, 축제

<Key Words>

Deuteronomic Law, Fatherless, Widow, Sojourner, Land, Feast

* 접수일 2015년 7월 26일, 수정일 2015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15년 8월 20일

참고문헌

- 왕대일, “나그네(게르, 17) -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113 (2001), 101--121.
- 하경택, “구약성서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와 대응방안 - <노크리>와 <게르>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9 (2010), 61-88.
- Bendor, Shunya, *The Social Structure of Ancient Israel: The Institution of the Family (Beit 'Ab) from the Settlement to the End of the Monarchy*, Jerusalem: Simor, Limited, 1996.
- Bennett, Harold V., *Injustice Made Legal: Deuteronomic Law and the Plight of Widows, Strangers, and Orphans in Ancient Israel*,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2.
- Bertrand, Marianne, “L'étranger dans les lois bibliques,” *L'étranger dans la bible et ses lectures*, ed., Jean Riaud, 55-84, Paris: Cerf, 2007.
- Bird, Phylis A., *Missing Persons and Mistaken Identities: Women and Gender in Ancient Israe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7.
- Braulik, Georg, “The Political Impact of the Festival,” *SK* 20 (1999), 326-339.
- Driver, Samuel Rolles,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Deuteronomy*, Deuteronomy, Edinburgh: T. & T. Clark, 1902.
- Englehard, David H., “The Lord's Motivated Concern for the Underprivileged,” *CTJ* 15 (1980), 5-26.
- Epsztein, Léon,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London: SCM Press, 1986.
- Fensham, Frank Charles,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29-139.
- Gowan, Donald E., “Wealth and Poverty in the Old Testament: The Case of the Widow, the Orphan, and the Sojourner,” *Interpretation* 41 (1987), 341-353.
- Hoffner, Harry, “הַנְּמֻלָּה,” *TDOT*, vol. 1, 287-291, Grand Rapids, MI:

Eerdmans, 1977.

Hoppe, Leslie, *Being Poor: A Biblical Study*, Wilmington, DE: Michael Glazier, 1987.

Houten, Christiana, *The Alien in Israelite Law*, Sheffield: JSOT Press, 1991.

Kellermann, Diether, “רוג,” TDOT,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vol. 2, 439-449, Grand Rapids: Eerdmans, 1977.

Kühlewein, Johannes, “הַנְּמֻלָּא,” TDOT, ed. Ernst Jenni and Claus Westermann, vol. 1, 127-130,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97.

Lang, Bernhard, “רכני,” TDOT, ed.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vol. 9, 421-431, Grand Rapids: Eerdmans, 1977.

Mayes, A. D. H., *Deuteronomy*, London: Oliphants, 1979.

Ramírez Kidd, José E., *Alterity and Identity in Israel: The אֲרָם in the Old Testament*, BZAW, no. 283,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Renkema, Johan, “Does Hebrew YTW M Really Mean Fatherless?” *VT* 45 (1995), 119-122.

Ringgren, “מורח,” TDOT, ed.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gren, vol. 6, 477-481, Grand Rapids: Eerdmans, 1977.

Spina, Frank Anthony, “Israel as gerî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The Word of the Lord Shall Go Forth: Essays in Honor of David Noel Freedman*, ed. Carol L. Meyers and M. O’Connor, 321-335,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83.

Steinberg, Naomi, “Romancing the Widow: The Economic Distinctions Between the ‘ALMANA, the ‘ISSA-’ALMANA and the ‘ESST-HAMMET,” Simon John De Vries et al., eds., *God’s Word for Our World*, JSOTSS, vol. 388, 327-346,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 2004.

Tigay, Jeffrey, *Deuteronomy*, Philadelphia, P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6.

Weinfeld, Moshe, “The Origin of the Humanism in Deuteronomy,” *JBL* 80 (1961), 241-247.

_____.,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2.

<초록>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을 위한 신명기의 유산법

강은희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구약학)

본고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을 위한 신명기 규정들의 의의를 탐구한다. 신명기는 다양한 부류의 약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위한 구체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은 두드러져 있다. 그들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자들이고, 항상 함께 등장하며, 동일한 형태의 원조를 받게 되어 있다.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민의 이러한 특수성에 주목하며, 본고는 어휘론적 고찰로 이들 세 그룹의 개별적 특성을 명확히 한 후, 이들이 한데 엮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의미와, 이들에게 주어지는 도움의 본질을 밝힌다.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과부’는 가장의 죽음에서 비롯되며, ‘거류민’은 자신의 연고지를 떠나면서부터 형성되는 신분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으며 출발하지만, 이 세 그룹이 하나로 묶어지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임의적 조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에게는 땅을 소유한 성인 남성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명기법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추수밭의 남은 곡식과 추수절, 초막적 축제에 의 초대, 그리고 삼년마다의 십일조이다. 이 품목들은 모두 땅의 소출과 연결되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의 경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 규정들은 땅의 직접적인 소유권이 없는 이들 세 그룹에게 땅의 소출을 누릴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상속지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 땅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은 약자이며 가난한 이들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제책도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구제책의 특수성과, 약속의 땅 상속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신명기의 전체적 문맥을 고려한다면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위한 신명기의 규정들은 경제적 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본고는 아버지 없는 아이, 과부, 거류인을 인본주의적 도움과 동정의 대상을 넘어, 약속의 땅의 소출을 통한 상속의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Inheritance Law of Deuteronomy for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Prof. EunHee Kang

(Pusan Catholic Theological Institut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provisions for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in Deuteronomy. The Deuteronomic Law stipulates aids for various vulnerable groups in the Israelites. Among those groups,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are conspicuous: they are the most fre-

quently mentioned, they are considered as a unity rather than three differential groups, and they receive the same kind of provisions. Noting this specificity, this paper studies (1) the significance of the combination of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2) and the nature of the provisions for these groups.

This study starts with a lexical examination of each group. The status of the fatherless and the widow generates from the point when a family loses its father and husband. People become sojourners when they live in a land other than their hometown.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seem to have their own respective difficulties. However, once they are grouped together, they become something more than a random sampling of the poor groups of people. They are in common in that they are not male adult land owners. And the Deuteronomic Law guarantees them the leftovers from the harvest field, invitations to the Feast of Weeks and Feast of Booths, and triennial tithe. All these items are related to the yields from the land, and meant to be something more than an economic aid out of the humanitarian concern. By relating the portions for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to the yields of the land, Deuteronomy sees to that in the Promised Land, nobod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God's inheritance.

Traditionally,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are considered as vulnerable and poor, and the provisions for these groups are understood from the humanitarian perspective.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aids provided for these groups and the context of Deuteronomy as a teaching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are to inherit the Promised Land, the provisions for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signify something more than an alleviation of economic difficulties for the poor groups among the people of Israel. This paper suggests the fatherless, the widow and the sojourner are not so much the object of humanitarian action as the subject of the inheritance of the Promised Land.